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7일, 임의자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24.9.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
토론 · 소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1.) 상정 · 축조심사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2.) 상정 · 축조심사 · 의
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4.9.12.)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이자의원)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지연이자 등 여러 제재수단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손을춘)

1.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임금체불 관련 현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제43조),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제109조), 미지급 임금(사망·퇴직근로자에 한정)에 대한 법정지연이자 지급(제37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제43조의2) 및 신용제재(제43조의3) 등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기준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약 18만건, 피해 근로자수는 약 27만명, 임금체불 신고 금액은 약 1조 7,845억원에 이르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표] 연도별 임금체불 관련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구분	접수건수	근로자수	체불금액	접수건수	근로자수	체불금액	접수건수	근로자수	체불금액
신고	160,304	247,005	1,350,452	155,424	237,501	1,347,209	185,211	275,432	1,784,530
처리	계	157,864	242,541	1,314,096	153,342	233,458	1,310,104	182,487	270,074
	지도 해결	111,001	157,782	740,251	114,318	161,193	805,980	141,275	196,866
	사법 처리	46,863	84,759	573,846	39,024	72,265	504,124	41,212	73,208

*자료: 고용노동부

현행법상 임금체불 제재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고, 신용제재·명단공개 제도를 병행중이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대상이 적어 그 효과가 미흡한 상황인바,¹⁾ 정부는 2023. 5. 『상습채불 근절 대책』을 통해 상습채불 사업주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정부지원금 수급제한, 공공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²⁾

개정안은 임금채불 발생 현황을 고려하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 등을 반영하여 ①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을 재직근로자로 확대하고(안 제37조), ②채불사업주 신용제재의 대상을 1년 이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채불하거나 5회 이상 · 총액 3천만원 이상 채불한 사업주까지 확대하며,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 및 공공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신설하고(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③명단공개, 신용제재 등의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는(안 제43조의5 및 제43조의6) 등의 내용으로, 채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임금채불을 예방하고, 근로자 생계보호에 기여함에 의의가 있다고 볼 것임.

1) (요건) 3년간 2회 이상 유죄확정+1년간 채불총액 3천만원(명단공개), 2천만원(신용제재) 이상
2023년 명단공개 대상자 172명, 신용제재 대상자 308명

2) 고용노동부, “상습채불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한다”, 2023년 5월 3일자 보도자료

2. 현행법상 임금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신용제재 및 입찰 시 감점 등 제재조치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①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②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³⁾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신용제재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 동안⁴⁾ 신용관리 대상으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되는 조치를 말함.

체불사업주의 신용제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서 규정하는데, 종합정보신용집중기관이 ①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②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

3)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명단공개의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4)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이 해제됨.

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3년~2024년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인원>

(단위: 명)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차	계
명단공개	290	183	344	116	403	365	385	362	150	265	297	194	3,354
신용제재	505	290	558	191	675	607	673	647	292	438	530	307	5,713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0조⁵⁾에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 결정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6)에서는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 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세부심사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있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⁷⁾ 공사수행능력의 세부 심사방법에 있어 임금채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가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삭제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용역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7)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조(심사기준) 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는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발주기관이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난이도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고난이도 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2], [별표2] 내지 [별표4]

2.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일반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1], [별표2] 내지 [별표4]

3.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간이형 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3], [별표2] 내지 [별표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의 공사는 문화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2)>

7. 건설인력 고용 심사

다.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 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기간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 4) 근로기준법 준수 등급 및 등급별 점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 심사기준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 점수에서 감점이 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3.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시 가산된 지연이자 적용(안 제37조)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을 현행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임(안 제37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u>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u>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u> ----- ----- ----- ----- ----- ----- ----- ----- ----- -----.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②</u> (생 략)	<u>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u> <u>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u> <u>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	--

나. 검토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⁸⁾ 이를 그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8)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⁹⁾ 대통령령에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한편,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경우, 그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고¹¹⁾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¹²⁾ 근로자의 사망·퇴직 등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등의 관련 채무를 청산할 때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연 20%)과 재직 근로자의 임금채불 시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연 6%, 최대 12%)이 상이함.

9)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11)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안은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 내 규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조기 청산을 유도하고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재직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의 범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사망·퇴직 근로자	<u>연 100분의 40 이내</u> 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율에 따른 지연이자	<u>연 100분의 40 이내</u> 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율에 따른 지연이자
재직근로자	연 6%(상사이율) *소송제기 시 12%까지 가능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적용 시점이 달라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불이 계속되는 중에 해당 근로자가 사망·퇴직한 경우 지연이자율의 적용 시점이 안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사유 발생일(사망·퇴직)의 다음 날부터인지, 안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금지급일의 다음 날부터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안 제37조제2항을 둔 것으로 보임.

4. 명단 공개의 요건이 되는 체불임금등의 범위 명확화 (안 제43조의2제1항)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의 기준이 되는 임금등 체불총액에 포함되는 사항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등¹³⁾을 명시함(안 제43조의2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u>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u> (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① ----- ----- -----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u>그 밖의 모든 금품</u> ----- ----- ----- -----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나. 검토내용

현행법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의 대상을 ①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②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명단공개 기준이 되는 ‘임금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퇴직·사망에 따른 퇴직금 등 정산금(제36조), 임금(제43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의 초과근로수당(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연장·야간·휴일 초과근로수당(제56조)이 포함되어 있고,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납분¹⁴⁾이나 사용

1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는 사용자의 지급분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고정되어 있어 기업의 지급의무 부담분이 확정되어 있음.

자에게 지급책임이 있는 퇴직연금¹⁵⁾의 미지급분도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나, ‘임금등’의 구체적인 사례로 명시되지 않아 그 포함여부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음.

개정안은 명단공개 기준이 되는 ‘임금등’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퇴직급여등에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미납입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¹⁶⁾가 포함됨.

개정안은 퇴직연금에 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도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임.

1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말함.

5. 상습체불사업주의 정의 및 신용제재, 보조·지원제한을 위한 정보제공 근거 마련(안 제43조의3, 안 제43조의4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①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하거나, ②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3조의2제3항 및 제43조의4제2항),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의 제 규정을 마련하며(안 제43조의2제4항),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을 하거나,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또는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조치를 위해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4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u>공개 여부</u> 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부에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 <u>(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u> <u>다)</u> 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② (생 략) ③ ----- ----- <u>공</u> <u>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u> <u>상습채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u> ----- -- <u>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u> <u>서</u> ----- ----- ----- ----- ----- ----- -----.
< <u>신 설</u> >	④ <u>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u> <u>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u> <u>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u> <u>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u> <u>으로 본다.</u>
④ (생 략) 제43조의3(임금등 채불자료의 제 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임금등 채불자료의 제 공) ① -----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채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불사업주-----

-----.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
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
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u><신 설></u>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u>체불사업주</u> 2.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 사업주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 ①</u> <u>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한다)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u>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
---	--

	<u>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u>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② 상습체불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	--

③ 제2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 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금 등 체불횟수의 산정 및 제3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내용

현재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외의 제재조치에는 명단공표, 신용제재, 공공영역에서의 계약상 불이익 부과가 있는데, 개정안은 신용제재의 대상에 ‘상습체불사업주’를 추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이나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공공영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관련하여 체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①고용노동부장관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불정보를 활용한 개별적인 제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점, ②임금체불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상습적인 체불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 ③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될 자에게 사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 ④체불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따른 임금체불사업주 제재조치 변경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확 대> 신용제재 목적 자료제공	제재대상	① 자료제공일 3년 이내 2회 이상 임 금체불 유죄 확정 + ② 자료제공일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	현 행 + 안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상습체불사업주 요건> ○ 다음 중 임금체불정보심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자 - 자료제공일이 속한 연도

			의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 자료제공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체불임금등 범위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임금등) ¹⁶⁾	현행 유지하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¹⁷⁾ 이 포함됨을 명확화
<신 설> 보조·지원 제한 등 목적 자료제공	자료요청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요청목적	-	① 각종 보조, 지원 사업의 참여 배제, 수급제한 ②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제공기준	-	안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다만, 개정안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제한, 공공영역에서의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임금체불행위에 대한 신용제재 등의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¹⁸⁾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6) 사망·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물품(제36조), 임금(제43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연장근로수당(제51조의3, 제52조제2항), 연장·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17)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18) 헌법재판소 2015. 2. 26. 2012헌바435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무죄추정원칙은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1990. 11. 19. 90헌가48; 헌재 1997. 5. 29. 96헌가17; 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참조). 여기서 ‘불이익’은 유죄를 근거로 그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 내지 기타 응보적 의미의 차별 취급을 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의미한다(헌재 2005. 5. 26. 2002헌바699등 참조).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헌재 2005. 5. 26. 2002헌바699등; 헌재 2006. 5. 25. 2004헌바12 참조)...

한편, 현행법상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나 신용제재에 관한 체불자료 제공 시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명단공개나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바,¹⁹⁾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보조·지원제한 등 목적의 자료 제공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둘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제재조치(신용제재, 보조·지원 등 제한, 계약상 불이익 조치 등)를 고려하여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습체불사업주의 지정 등을 검토하게 하는데, 위원회의 구성²⁰⁾이나 기존 심의사항과의 관련성²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에 이를 심의하게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음.

19)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①고용노동부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명, ②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대학 부교수 이상 교수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④ ①~③에 준하는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이 위원이 됨.

21)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결정 등을 심의

6. 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신용 제재, 보조 제한 등의 업무 위탁 근거 신설(안 제43조의5)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공개(제43조의2), 신용제재(제43조의3), 보조 및 지원 제한(안 제43조의4)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 연구기관·법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3조의5제1항),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²²⁾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3조의5제2항).

22)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43조의5(업무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u>

나. 검토내용

개정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상습체불 관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의 업무 위탁 규정은 근로복지공단,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제43조의2), 신용제재(제43조의3), 보조 및 지원 제한(안 제43조의4)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해당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명단공개, 신용제재 등)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²³⁾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²⁴⁾에서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로서 조사, 검사, 점검 등 사무와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 사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법제처는 개정안에 따라 위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제재적 성격의 공표에 관한 업무로서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거나 체불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을 목적으로 체불사업주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업무 등에 해당하는바, 국민의 권리·의

23)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점검·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점검·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업무를 모두 근로복지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²⁵⁾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의 업무위탁 시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재정소요에 관하여 상습채불사업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인건비,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등을 추계하였는바, 필요인원은 4~5인으로, 필요비용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5억 3,500만원~18억 3,300만원(연평균 3억 700만원~3억 6,700만원)으로 추산하였음.²⁶⁾

25)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단순 사실행위 또는 단순 행정사무 등의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없는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는 업무를 법률에서 특정하여 규정하거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서 특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공제조합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제2200205호) 비용추계서 참조

7. 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신용 제재, 보조 제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 등 요청 근거 마련(안 제 43조의6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명단공개, 신용 제재 등) 업무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국세청 등에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43조의6).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국가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체불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4.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검토내용

개정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명단공개, 신용제재 등)를 위해 법원행정처,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에 대한 소득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간 정보가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받는 자료는 개인정보로서 소득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간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정보의 수집, 공유 및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등의 보호라는 사익적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자료요청 허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⁷⁾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계 기관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요청 자료 및 수집의 필요성>

27) 특히, 개정안은 자료요청의 목적을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인 자료 수집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있음.

28)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안	자료제공 요청 대상	요청 자료	자료 필요성
안 제43조의6 제1항제1호	법원행정처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안 제43조의6 제1항제2호	국세청장	채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 ²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²⁹⁾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채불사업주(법인, 개인)의 가동 여부(파산·회생 포함), 주소, 대표자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 필요
안 제43조의6 제1항제3호		채불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	상습채불사업주 지정 시 채불임금 기준(3개월분 임금) 해당 여부 파악을 위한 자료 등 필요
안 제43조의6 제1항제4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³⁰⁾	상습채불사업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제공받아 채불액과 비교하여 상습채불 대상 판단 필요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신고사건 조사단계에서 월평균보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사건 조사전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필수적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³¹⁾	채불사업주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도산등 여부, 대지급금 수령 및 변제 여부)를 위해 관련 자료 필요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 29)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30)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를 및 산재보험료를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보수액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청은 개정안이 요구하는 과세정보가 ‘채불사업주’의 전체 과세 정보를 의미한다고 보는바, ‘채불사업장’에 관한 과세정보로 정보 요구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³²⁾ 채불사업장을 특정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3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채불임금등과 채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채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32)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과세정보는 채불사업장이 아닌 채불사업주의 전체 과세정보를 요구하게 되어 사용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요청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임.

8.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 제공 등 요청 근거 마련(안 제102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단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그 밖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02조의2제1항),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안 제102조의2제2항), 제공되는 자료에 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임(안 제102조의2제3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

	<u>자격에 관한 신고자료</u> <u>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u> <u>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u>
--	--

나. 검토내용

현행법상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고,³³⁾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특별사법경찰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조사³⁴⁾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은 ‘개별 사업장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서류제출 요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수사 개시 이후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임.

개정안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②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33)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34)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의 보호를 위하여 ③중앙행정기관 등 각종 기관·단체의 장에게 ④종합 소득에 관한 자료,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자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사 개시 이전에도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행정기관 등에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³⁵⁾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자등록정보나 사회보험 가입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위 ‘사업체 쪼개기’³⁶⁾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를 줄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 등을 적발할 수 있게 하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따라 자료요청권이 규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요청 예정 자료>

대상기관	요구자료	이용목적
국세청	소득자료, 사업자등록정보	노동법 회피를 위한 프리랜서 계약체결, 소위 ‘사업장 쪼개기’ 등 사각지대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대상 선정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 및 근로자 현황 파악을

35)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6)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수 개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다수의 사업이 있는 것처럼 꾸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

대상기관	요구자료	이용목적
	피보험자격신고자료, 보험관계 성립, 소멸 관련 자료	통한 취약계층 보호 및 사업주 노무관리 지도 강화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 자료 (체납자료 포함)	보험료 체납현황 등 파악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대상 선정
국토교통부	건설업 등록자료, 폐업·양도 신고자료, 건설공사 실적자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자료	건설업체 및 현장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한 건설업 임금체불 예방 지도
고용노동부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등의 가입내역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 예방지도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근로감독은 행정작용으로서의 감독뿐만 아니라 형사소추를 위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형사절차상 피의자 보호를 위한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정보·자료 요청권의 경우 요청의 목적, 대상 기관,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개정안은 정보·자료 요청권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목적을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호’로 규정하는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라 함은 균등한 처우, 강제근로 금지, 중간착취 배제, 근로계약서에 관한 사항, 부당해고등 부당한 대우, 임금과 근로시간, 휴식, 여성근로, 소년근로,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재해보상 등 매우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자료요청권이

근로감독 업무 일체를 위한 포괄적인 형태의 정보·자료 요청권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보·자료 제공의 요청을 받는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단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고, 그 자료를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데, 요청 대상 기관의 범위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법문만으로는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대지급금 지급,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용자 등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자료를 요청하는 대상 기관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 자료 요청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점,³⁷⁾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한다는 점³⁸⁾을 고려할 때, 요청 목적과 요청 대상 기관, 요청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제공되는 자료의 수수료,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에 관하여는 자료 요청 대상 기관에 민간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37) 【참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 규정 참조

38)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과세정보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국세청은 개정안에 따른 과세정보의 요구 목적(근로조건의 보호)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과세정보 제공 시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감독대상 사업자 선정 등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³⁹⁾

9. 부 칙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고(안 부칙 제1조),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지연이자 적용 시점을 이 법 시행 이후

39)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 ‘근로조건의 보호’를 추상적인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협조 요청 등)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2.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정보(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기간 중에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법정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하며(안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상습체불사업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습체불사업주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내용

안 부칙 제2조는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임.

안 부칙 제3조는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2012년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표 및 신용제재 규정 신설 당시 부가된 부칙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⁴⁰⁾

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270호, 2012. 8. 1. 시행)

다만, 안 부칙 제3조의 내용은 상습채불사업주를 결정할 당시 체불횟수와 체불액에 대한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법 시행 이전의 체불횟수와 체불액을 산정 기준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⁴¹⁾ 그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⁴²⁾

고용노동부는 상습채불 사업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1년 동안의 체불액을 확인해야 하고, 시행령 개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공포 후 1년으로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제4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채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채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조(채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41) 국회 법제실(2019), 「법제이론과 실제」, p. 758.

...구법에는 없던 새로운 제재처분이 신설되는 경우 신법 시행 전에 완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불리한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이익형량을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42) 예시 ①(법 시행 이전 체불행위 제외) : 안 제3조(상습채불사업주의 체불횟수 및 체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채불사업주를 정하는 경우 그 체불횟수와 체불액은 이 법 시행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예시 ②(법 시행 이전 체불행위 포함) : 안 제3조(상습채불사업주의 체불횟수 및 체불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한 임금등의 체불은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채불사업주를 지정하는 경우 그 체불횟수 및 체불액 산정에 포함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주영)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보조·지원사업 참여 배제 등을 위한 채불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채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채불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채불경위, 채불기간, 횟수, 채불규모 등을 감안하여 채불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채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